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. 10. 26 선고 2016가단1175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 2017. 8. 31.

판결 선고 2017. 10. 2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,

1)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, 별지 1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, 16, 17, 18,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ㄹ)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방 30㎡, 별지 1 목록 기재 제1,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, 20, 21, 22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부분 지상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24㎡, 별지 1 목록 기재 제1,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, 24, 25, 26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ㅅ)부분 지상 파이프조 스테이지붕 단층창고 10㎡, 별지 1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, 28, 44, 43,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부분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2㎡, 별지 1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46, 45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ㅇ)부분 지상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4㎡, 별지 1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, 36, 48, 47,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ㄷ)부분 지상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2㎡, 별지 1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9, 40, 41, 42,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ㅊ)부분 지상 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축사 67.5㎡를 각 철거하고,

2) 별지 1 목록 기재 제1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 1동을 수거하고,

3)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은 위 1.가.1)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C은 1990. 12. 22.경 부친 망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를 상속받아, 1993. 3. 1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D의 사망 이후, 그 처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2,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.

다.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강제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'라고 한다)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2016. 7. 15.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.

라.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과 컨테이너를 철거·수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C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들은 '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소유 명의만 망 D, 피고 C으로 되어 있었을 뿐,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이다.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소유자로서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'라고 주장하나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들은 '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명의인은 장남인 피고 C이었으나 실제 피고 B가 1976.경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점유·사용해왔고, 피고 B가 직접 그 지상에 건물까지 신축하여 소유해 온 점,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면서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 온 점, 특히 고령인 피고 B가 여생을 보낼 거주지를 잃을 안타까운 사정에 놓인 점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 등을 철거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철거로 인해 피고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 손해가 더욱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피고B에게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난 4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인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'라고 주장하나,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석준협

별지